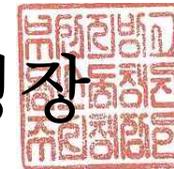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“폐문부재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11. 18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박○홍	82.12.23	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675 109동 101호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(의견제출 통지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일자에 미방문 및 출석통지 2회 불응 (연락두절)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○ 철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 : 2024. 11. 25. ~ 2024. 12. 2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다은(☎ 055-760-677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